

1. 세모녀법 개정사항

* 11.17일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

□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
- (선정기준 다층화) 기존 최저생계비와 현금기준선 기준을 대체하여, 급여 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로 정하게 됨
 - 개편후 선정기준은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되도록 정함
 - * 생계(중위 30%) → 의료(중위 40%) → 주거 (중위 43%) → 교육 (중위 50%)
- (급여 수준 인상) 급여특성을 고려 현실적 지원을 하게 돼 급여 수준 증가
 -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과 연동돼 현행 최저생계비 보다 빠르게 인상
 - * 최근 5개년('08-'13) 평균 인상률 : (최저생계비) 4.09%, (중위소득, 가계동향) 4.99%
 - 주거상황과 무관하게 현금급여의 약 20%를 지급했던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준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, 집수리 사업의 규모 대폭 확대
- (부양의무자 기준 완화) 기존 수급자는 부양비가 적게 산정돼 급여가 증가하고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시던 분들을 새롭게 보호
 - 부양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과 부양비를 부과하는 소득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 (14만명 추가 보호, 1조2천억 추가 재정투입)
 - 교육급여는 교육기회 균등·미래세대 육성 필요성 등 급여특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(40만명 추가 보호, 440억)
 -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(80억)
- (기대효과) 교육급여 수급자 40만명 포함, 현행 정부안(140만명→180만명)에 대비 약 42만명 추가 보호 예상
 -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20만명 수준으로 현재('13년 말)에 비하여

55%가량 증가(140만명→220만명) 예상

□ 긴급복지지원법 개정

- (대상자 선정기준 완화)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완화
 - * 소득기준 대폭 완화(시행령개정) : 최저생계비 150%(생계지원은 120%)→185%, 금융재산 완화(고시개정) : 300→5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500→700만원 이하)
- (지자체 재량 강화) 대상자 선정 요건인 '위기상황'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
- (기대효과) 선정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 확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활성화가 가능해져 지원 대상 가구 대폭 증가 기대
 - * 소득·금융재산 완화 및 지자체 재량확대 등을 포함하여 7.2만건 추가보호('14년 84천건 → '15년 156천건), 662억 증액(국비 514억)

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

- 사회보장급여 이용·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,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 및 방법 마련
 - *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 및 단전·단수·건보료 체납 등 정보 공유, 민관 협력 근거 마련 및 확인조사 근거 등 복지사업 사후관리 입법 미비 사항 보완
-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필요한 급여를 신청(동의 下)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맞춤형 복지 기반 마련
- **사회보장정보시스템** 활용 제고를 위한 정보 활용 범위, 표준화 및 비밀유지 의무 등 **개인정보 보호 강화** 내용 규정
 - * 정보보안대책 수립·시행, 침해행위 금지, 정보파기, 위반시 벌칙·과태료 등 부과
- (기대효과)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·관리의 일반적 절차와 업무 처리의 전자적 지원으로
 - 공정·정확한 대상자 선정, 원스톱 서비스 확대, 제출서류 감소 등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

2. 국민복지포털 구축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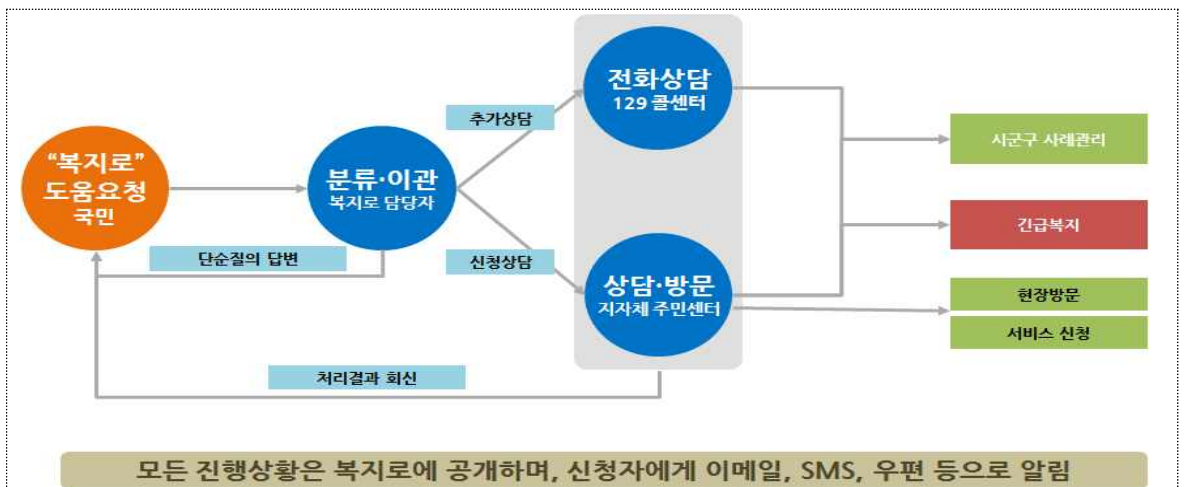
* '14.11.26일 보도자료(국민이 참여하는 “함께 만드는 복지”사이트로 개편) 참고

□ 추진배경 및 개편방향

- 기존의 복지포털(“복지로”, www.bokjiro.go.kr)가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고, 참여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
- 국민들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,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복지로의 기능을 대폭 보강
 - (편의성) 메뉴를 단순화하면서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, 연관검색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의 편의성 제고('14.6월)
 - (국민참여) 도움(복지지원)을 요청하거나 복지재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신고하는 등 국민참여 코너 대폭 개설(~'14.12월)

□ 개편된 주요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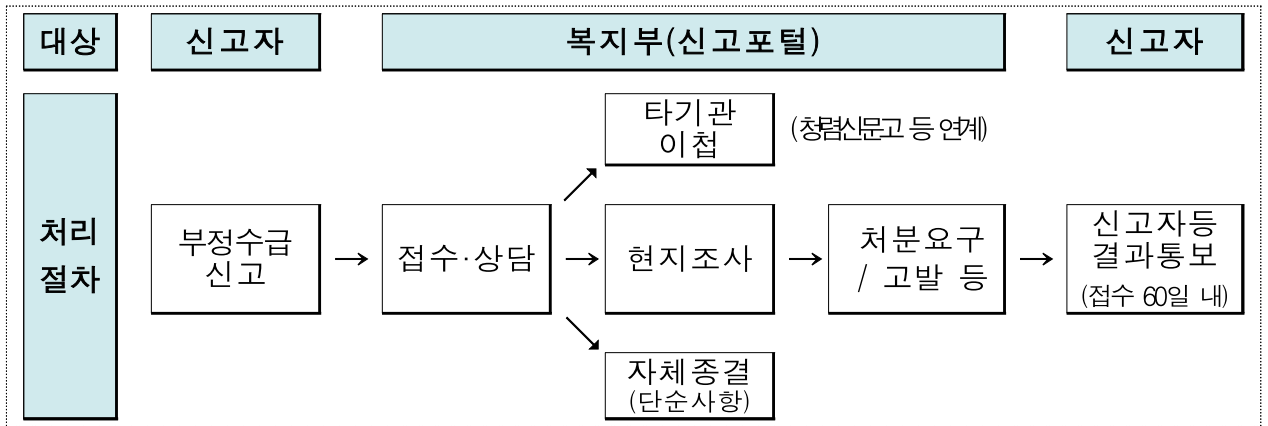
- 기존 복지관련 정보검색 외에 국민들이 복지관련 고민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조사·처리해서 답변 제공
- 도움신청·처리결과 확인 (12.29일 서비스 개시)
 -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도움 요청(본인 또는 이웃) → 담당자 연결 → 조사·처리결과 입력 → 신청자의 처리결과 확인



- 복지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콜센터(129) 전화·채팅상담도 가능

○ 재정누수 신고·처리결과 확인 (11월 서비스 개시)

- 이용자 허위 등록, 소득·재산을 적게 신고 등 부정수급 발견
 → 신고(익명신고 가능) → 소관부서 조사·처리 → 신청인 확인



- 신고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
 대표전화(044-202-2092) 이용

○ 기타 복지서비스 검색 등 기능개편 (12.29일 개시, 일부기능은 '15.6월)

-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, 보육료·초등고교육비·기초연금
 등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복지서비스 등 확인

* 건강보험·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기능 등도 추가 검토